

의안번호	2202401
의 퇴 인	강경숙 의원
회 답 일	2024.08.13.
추 계 번호	24C2425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2 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	(제3항)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교에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의2 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어려움
- 교육부는 현행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근거하여 생활지도의 범위,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인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¹⁾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해설서²⁾를 배포
 - 해당 해설서에 따르면 시·도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, 학생선도규정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, 고시 적용 등 연수를 지원하며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제반여건(분리장소, 지원인

1) 교육부고시 제2023-28호

2)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해설서, 2023.9.

력, 비상 연락 시설 등)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³⁾

- 다만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 법안의 제안이유 등⁴⁾을 고려할 때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·신규사업을 통하여 인적·물적 지원이 추가될 수 있음

- 그러나 교육청별·학교별로 교육여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

□ 이에 개정안은 법 시행에 따라 추가될 사업내용과 예산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이 어려운 경우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3) 이외에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제·개정과 매3년 마다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및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을 하며, 각급 학교의 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제방지원사항을 점검·지원하며, 고시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·연수 추진 등의 역할을 담당

4)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2401호) 제안이유
(...)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**학교내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.**(이하 생략)